

영국의 생활임금

김근주*

I. 머리말

영국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지만, 현재 생활임금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걸쳐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영국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실질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최저임금 한계론’으로 부터 시작하였는데, 2001년 생활임금 캠페인이 시작된 지 15여 년 만에 1,128개 사업장에서 채택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생활임금과 같이 노사간의 갈등 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우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자발적인 캠페인에서 시작된 생활임금은 현재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생활임금에 관하여 그 논의의 전개 과정(제II장), 산정방식(제III장), 최저임금과의 비교(제IV장), 생활임금의 정책적 활용(제V장) 순으로 검토한 후 이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영국에서 생활임금 논의의 전개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 영국에서 임금의 최저기준에 관한 논의는 국가 또는 산별 단위의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전문연구원(rockparty@hanyang.ac.kr).

실시 이후에도 그 기준에 대한 적정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런던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만으로는 근로빈곤층을 탈피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01년부터 시민단체 ‘런던시티즌(London Citizens)’은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만으로도 최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생활임금 캠페인을 전개하였다.¹⁾

최초의 생활임금 캠페인은 사용자의 자발적인 생활임금 채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생활임금 지급을 거부하여 왔다. 그리고 생활임금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사용자들 역시 사업 내 정규직에게만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실제 저임금이 문제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하청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²⁾

이처럼 생활임금 캠페인이 단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임금 캠페인의 지지자였던 런던 시장 켄 리빙스톤(Ken Livingstone)은 2005년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 : GLA³⁾) 산하에 생활임금국을 설립하고 생활임금을 런던의 공식적인 캠페인으로 활용하였다. 생활임금국은 런던의 생활비와 전체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매년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런던 시장은 생활임금을 공표하였다. 이 외에도 생활임금국은 생활임금 사업장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데, 생활임금 사업장이란 비정규직과 하청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이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생활임금국은 이를 삭제한 후 공표하도록 하였다.⁴⁾

런던시가 생활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생활임금은 런던 외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사회정책연구소(The Centre for Research in Social Policy) 산하 조지프 라운트리 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은 런던 외 지역의 생활임

1) 런던시티즌은 1996년 런던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학교, 종교단체 등이 속한 공동체가 연합한 것이다. 런던 동부지역은 저소득층과 이민자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아서 임금 하한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근로자와 그 가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2002년부터 생활임금을 채택한 금융 그룹 바클레이스(Barclays)의 경우, 처음에는 생활임금을 정규직(full-time employee)에게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권의 특성상 생활임금의 실질적인 대상자는 실제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3) GLA는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시장과 시의원들의 구성체로 런던의 환경, 경제 개발, 문화, 미디어와 스포츠, 공공정책, 투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GLA의 구체적인 권한에 관해서는 양도식(2011), 『대런던위원회 10년의 평가: 기능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국토』 2월호(통권 352호), pp.96~107 참조.

4) 2011년부터 생활임금은 전년도 11월에 공표하여 1월 1일부로 적용되고 있다.

금을 산정한 후 공표하였다. 이후 2011년 발족한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에서 생활임금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의 산정에 관해서는 러프버러대학 사회정책연구센터에 위임하고 있다.

Ⅲ. 생활임금의 산정방식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임금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공표된다.⁵⁾ 생활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기본적 생활 유지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므로 가구당 기본생활비가 큰 영향을 미치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를 부가적으로 고려한다. 런던 생활임금과 런던 외 생활임금의 산정방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런던 생활임금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런던 생활임금의 산정은 기본생계비산정(Basic Living Costs approach)과 소득분배산정(The Income Distribution approach)을 각각 실시한 후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⁶⁾ 기본생계비산정은 임금생활자와 그 부양가족이 적정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면서 건강하고 사회 참여가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소득분배산정은 가구유형에 따른 가치분소득 산정을 통하여 빈곤선을 탈피하기 위한 임금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용형태와 임금분포도를 바탕으로 가계 형태별 중위값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계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먼저 기본생계비산정을 살펴보면, GLA 생활임금국에서는 주민들의 대표적인 가구 유형을 ① 유형1(4인 가구) : 성인 2인, 아동 2인(10세, 4세) ② 유형2(3인 가구) : 성인 1인, 아동 2인(10세, 4세), ③ 유형3(2인 가구) : 2인의 성인, ④ 유형4(1인 가구) : 성인 1인의 네 가지로 가정한 후, 이에 따른 기본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 가구 유형별 생계비 파악은 세금공제와 사회보장 혜택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며,

5) Pennycook, M.(2012), “What Price a Living Wage? Understanding the Impact of a Living Wage on Firm-level Wage Bills,” *IPPR and Resolution Foundation*, p.15.

6) 런던 외 생활임금에서는 가계예산단위(Family Budget Unit)와 수용가능 저임금(Low Cost but Acceptable)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조사 방식의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점은 없다. 런던 외 생활임금 산정방식에 관해서는 Lawton, K. and M. Pennycook(2013), “Beyond the Bottom Line-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a Living Wage”, *IPPR and Resolution Foundation*, pp.19-23 참조.

영국의 높은 단시간근로 비율을 고려하여 가구별 임금소득자 중 전일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혼재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구에 있어서 근로자 유형을 조합하여 생계비를 산정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기본생계비산정은 실질적 생계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다섯 가지, 즉 장바구니 비용(Shopping basket costs), 주거비, 지방세(Council Tax⁷⁾), 교통비,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본생계비산정은 <표 1>과 <표 2>에 나타난 비용을 근로소득을 통해 충당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표 1> 런던 기본생계비(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유형 1				유형 2	
	2ft	1ft 1pt	2pt	1ft/1pt	ft	pt
장바구니비용	220.80	220.80	220.80	220.80	167.40	167.40
주거비	117.60	117.60	117.60	117.60	117.60	117.60
지방세	24.90	24.90	24.90	24.90	18.70	18.70
교통비	65.30	65.30	65.30	32.60	32.60	32.60
양육비	295.10	143.40	143.40	0.00	0.00	0.00
총비용	723.70	572.00	572.00	396.00	631.40	479.70

주: 1) 유형 1(4인 가구): 성인 2인, 아동 2인(10세, 4세) / 유형 2(3인 가구): 성인 1인, 아동 2인(10세, 4세)
 2) ft = full-time pt = part-time
 3) 생계비 산정 시 10펜스 단위에서 반올림.

자료: GLA(2014), "A Fairer London: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10.

<표 2> 런던 기본생계비(아동이 없는 가정의 경우)

	유형 3				유형 4	
	2ft	1ft 1pt	2pt	1ft/1pt	ft	pt
장바구니비용	132.50	132.50	132.50	132.50	103.60	103.60
주거비	202.00	202.00	202.00	202.00	127.40	127.40
지방세	24.90	24.90	24.90	24.90	18.70	18.70
교통비	65.30	65.30	65.30	32.60	32.60	32.60
총비용	424.70	424.70	424.70	392.00	282.30	282.30

주: 1) 유형 3(2인 가구): 성인 2인 / 유형 4(1인 가구): 성인 1인
 2) ft = full-time pt = part-time
 3) 생계비 산정 시 10펜스 단위에서 반올림.

자료: GLA(2014), "A Fairer London: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10.

7) 영국 지방세는 지역 거주자의 주택 평가액에 속하는 등급(자가 주택인지 임대 주택인지 불문)과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세금으로, 재산가치세와 인두세를 결합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방세는 소득세와 함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장 큰 세금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가 PAYE(Pay As You Earn) 시스템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반면, 지방세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금공제, 주거보조비, 육아보조비, 지방세감면 혜택 등 사회보장제도가 고려되지만, 참고적으로 이러한 혜택들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만으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준도 같이 산정하고 있다.

〈표 3〉 기본생계비산정에 의한 생활임금 산정

	유형 1				유형 2	
	2ft	1ft 1pt	2pt	1ft/1pt	ft	pt
적용 대상자	245,400	244,700	15,200	289,900	41,800	48,700
사회보장 적용시 생활임금	£6.50	£6.50	£8.95	£6.50	£7.30	£10.55
사회보장 미적용시 생활임금	£11.00	£11.25	£15.84	£11.65	£15.84	£15.84
	유형 3				유형 4	
	2ft	1ft 1pt	2pt	1ft/1pt	ft	
적용 대상자	373,600	86,000	14,600	191,700	742,300	
사회보장 적용시 생활임금	£6.50	£7.80	£12.05	£9.25	£8.65	
사회보장 미적용시 생활임금	£6.50	£8.50	£13.45	£12.80	£8.65*	

주: 1) 유형 1(4인 가구): 성인 2인, 아동 2인(10세, 4세)/ 유형 2(3인 가구): 성인 1인, 아동 2인(10세, 4세)/ 유형 3(2인 가구): 성인 2인/ 유형 4(1인 가구): 성인 1인

2) ft = full-time pt = part-time

3) 유형 4의 1인 가구에서는 적용되는 사회보장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 적용 여부에 따른 생활임금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자료: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14.

소득분배산정은 가처분소득의 중위값(중위소득)을 산정한 후 그 60%를 생활임금 기준으로 보고자 한다. 이처럼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연금부(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에서 근로를 통한 빈곤층 탈출의 최저선을 중위소득의 60%로 설정하고 사회보장 혜택 등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소득분배산정 역시 기본생계비산정과 마찬가지로 가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가구별 중위소득을 산정하고 있다.

〈표 4〉 가구별 유형에 따른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60%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중위소득	527.30	359.00	374.00	205.70
중위소득의 60%	316.40	215.40	224.40	123.40

주: 유형 1(4인 가구): 성인 2인, 아동 2인(10세, 4세)/ 유형 2(3인 가구): 성인 1인/ 아동 2인(10세, 4세)/ 유형 3(2인 가구): 성인 2인/ 유형 4(1인 가구): 성인 1인

자료: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17.

8)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households_below_average_income_hbai_1994_to_2014(접속일: 2015.1.17)

〈표 5〉 중위소득의 60%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 수준

	유형 1				유형 2	
	2ft	1ft 1pt	2pt	1ft	ft	pt
모든 사회보장 혜택 포함						
중위소득의 60%	£6.85	£7.50	£10.85	£6.50	£8.80	£13.40
사회보장 혜택 제외						
중위소득의 60%	£11.60	£12.05	£15.84	£14.10	£15.84	£15.84
	유형 3				유형 4	
	2ft	1ft 1pt	2pt	1ft	ft	
모든 사회보장 혜택 포함						
중위소득의 60%	£6.50	£9.15	£14.65	£15.10	£8.15	
사회보장 혜택 제외						
중위소득의 60%	£6.50	£9.15	£14.65	£15.10	£8.15	

주: 1) 유형 1(4인 가구): 성인 2인, 아동 2인(10세, 4세) / 유형 2(3인 가구): 성인 1인 / 아동 2인(10세, 4세) / 유형 3(2인 가
구): 성인 2인 / 유형 4(1인 가구): 성인 1인.

2) ft = full-time pt = part-time.

자료: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p.17~18의 내용을 발췌 및 편집.

이와 같이 산정된 기본생계비산정과 소득분배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별 평균치를 산정하게 되며, 런던 지역의 비싼 물가를 고려하여 15%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 런던 시
간당 생활임금으로 2014년 11월 공표된 런던 시간당 생활임금은 9.15파운드(약 15,000원)
이다. 참고적으로 러프버러대학 사회정책연구센터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런던 외 생활
임금을 7.85파운드(약 12,900원)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런던 가중치 적용 전 생활임금과
약 10펜스(164원)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9)

〈표 6〉 2014년 런던 시간당 생활임금 산정방식

산정방식	사회보장 혜택 포함	사회보장 혜택 제외
기본생계비산정(1)	£7.65	£9.90
소득분배산정(2)	£8.25	£10.40
산정 생활임금(3) : (1)+(2)의 평균값	£7.95	£10.15
런던 생활임금 = (3) X 1.15	£9.15	£11.70

주: 5펜스 단위에서 반올림.

자료: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20.

9) 환율은 2015년 1월 18일 기준 환율(1파운드=1,638.34원)을 적용.

IV.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영국은 20세기 초반부터 근로빈곤층의 임금 확보를 위한 입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왔지만,¹⁰⁾ 국가 단위의 최저임금이 실시된 것은 1999년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다.

1997년 노동당 블레어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를 설립한 후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을 제정하고 1999년부터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다. 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구로 노사정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하여 정부에 권고 및 자문하는 기관이다.

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다만 최저생계비 결정과 같이 특정한 지표나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분포,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저임금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자료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경제, 물가, 임금인상률, 각종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¹¹⁾ 이처럼 최저임금은 국가 차원에서 거시적인 지표들을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그 인상에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유지라는 차원 이외에도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검토되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그 결과 2000년대 초반부터 생활임금 캠페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10) 20세기 들어 저임금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압력이 고조된 결과 이들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위원회법(Trade Boards Act 1909)을 제정하고, 1911년 저임금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강제적인 임금결정기구로 노사정 3자로 구성된 임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후 1945년 임금심의회법(Wages Councils Act 1945)에 의해 임금위원회는 보다 더 큰 권한과 결정범위를 가진 임금심의회로 재편되었고,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금심의회는 산별 단위의 임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1960년대까지 유지되어 전체 근로자의 약 20%(약 350만 명)가 임금심의회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집권한 마거릿 대처의 보수당 정부에서는 임금심의회의 심의위원 수를 축소하는 등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으며, 결국 1993년 노동조합 개혁·고용권리법(Trade Un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s Act 1993) 제35조에 따라 2개의 농업임금심의회를 제외하고 26개 임금심의회가 폐지되었다.

11) 2014년 저임금위원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① 경제성장률, ② 임금상승률, ③ 물가상승률, ④ 고용률 및 실업률, ⑤ 일자리 수 및 노동생산성, ⑥ 경제성장 전망자료(40개 이상의 각종 은행, 연구소, 협회, 대학 등에서 발표한 경제전망 자료), ⑦ 최저임금 영향 분석, ⑧ 일자리 분석, ⑨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그룹 및 지역별 일자리 분석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표 7〉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수준의 비교

	런던생활임금	런던 외 생활임금	최저임금			
			21세 이상	18-20세	18세 미만	건설
2005	£6.70	-	£5.05	£4.25	£3.00	-
2006	£7.05	-	£5.35	£4.45	£3.30	-
2007	£7.20	-	£5.52	£4.60	£3.40	-
2008	£7.45	£6.88	£5.73	£4.77	£3.53	-
2009	£7.60	-	£5.80	£4.83	£3.57	-
2010	£7.85	-	£5.93	£4.92	£3.64	£2.50
2011	£8.30	£7.20	£6.08	£4.98	£3.68	£2.60
2012	£8.55	£7.45	£6.19	£4.98	£3.68	£2.65
2013	£8.80	£7.65	£6.31	£5.03	£3.72	£2.68
2014	£9.15	£7.85	£6.50	£5.13	£3.79	£2.73

자료 :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p19~21 중 발체 ·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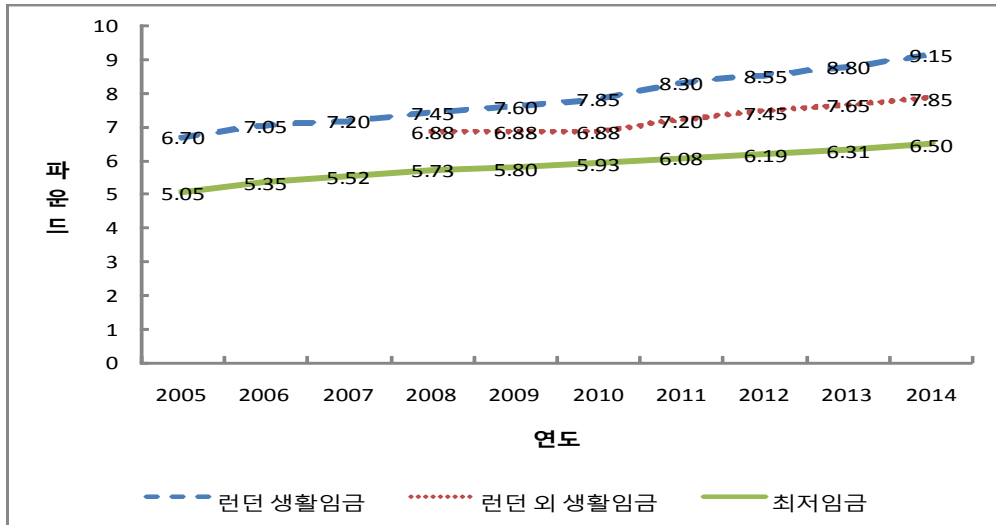
2014년을 기준으로 성인의 최저임금은 런던생활임금 대비 약 71%, 런던 외 생활임금 대비 약 83%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생활임금에서는 연령별 금액과 건설 금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계층에서 생활임금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최저임금 중 가장 금액이 많이 적용되는 건설생의 경우 최저임금은 런던생활임금 대비 약 30%, 런던 외 생활임금 대비 약 35%에 그친다(2014년 기준). 한편 생활임금은 ‘생활 가능한 소득액 보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인상률에 있어서도 최저임금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표 8〉 생활임금, 최저임금, 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지수 비교

	런던생활임금			런던 외 생활임금			최저임금		임금 인상률	소비자 물가지수
	임금	인상분	인상률	임금	인상분	인상률	임금	인상률		
2005	£6.70	-	-	-	-	-	£5.05	-	4.3%	2.0%
2006	£7.05	£0.35	5.2%	-	-	-	£5.35	5.9%	3.9%	2.3%
2007	£7.20	£0.15	2.1%	-	-	-	£5.52	3.2%	4.2%	2.3%
2008	£7.45	£0.25	3.5%	£6.88	-	-	£5.73	3.8%	3.7%	3.6%
2009	£7.60	£0.15	2.0%	-	-	-	£5.80	1.2%	1.7%	2.1%
2010	£7.85	£0.25	3.3%	-	-	-	£5.93	2.2%	1.9%	3.3%
2011	£8.30	£0.45	5.7%	£7.20	-	-	£6.08	2.5%	2.0%	4.5%
2012	£8.55	£0.25	3.0%	£7.45	£0.25	3.5%	£6.19	1.8%	1.6%	2.8%
2013	£8.80	£0.25	2.9%	£7.65	£0.20	2.7%	£6.31	1.9%	1.0%	2.5%
2014	£9.15	£0.35	4.0%	£7.85	£0.20	2.6%	£6.50	3.0%	0.7%	1.7%

주 : 최저임금은 21세 이상 성인 최저임금 기준
 자료 : Low Pay Commission(2014), ONS and GLA Economics calculations.

[그림 1]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비교



V. 생활임금의 정책적 활용

2014년 1월 기준으로 생활임금 사업장은 총 1,128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런던시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78개, 민간부문에서는 영국 최대 기업인 HSBC그룹을 포함한 FTSE 100 지수¹²⁾ 기업 중 21개 기업이 생활임금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¹³⁾ 생활임금 사업장으로 등록되는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의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파견·용역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에도 생활임금은 많은 사업장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런던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 미만을 받는 가구를 근로빈곤층으로 보고, 근로빈곤층의 15% 이하 유지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등록 생활임금 사업장과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생활임금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12) FTSE 100(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100) 지수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 MSCI)와 함께 유럽을 대표하는 세계 2대 벤치마크지수이다. FTSE 100 지수는 영국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1995년 공동 설립한 FTSE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지수로, 영국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주식을 지수화한 것이다.

13) <http://www.livingwage.org.uk/employers>(접속일 : 2015. 1. 18)

〈표 9〉 런던의 생활임금 미만 수입 근로자 비율

전체	전일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20.5%	12.9%	48.8%
남성	전일제 남성 근로자	단시간 남성 근로자
17.3%	12.2%	53.7%
여성	전일제 여성 근로자	단시간 여성 근로자
24.1%	14.0%	46.7%

자료 :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22 중 발체 · 편집.

서, 생활임금을 채택하는 경우 사업장에 추가로 세제 혜택 등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¹⁴⁾

생활임금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입찰에 있어서 생활임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생활임금 사업장으로 한정하거나, 입찰 후 계약 시 생활임금 사업장에 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사법재판소가 공공부문 산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독일의 공공조달계약에 대하여 자유로운 재화와 용역의 이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2008년 Ruffert사건 이후 축소되는 듯했지만,¹⁵⁾ 최근에는 동 사건이 입법을 통한 임금최저선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입법 자치권이 있는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2014년 공공조달 개혁법(Procurement (Reform) Act 2014)을 제정하고 공공조달 시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입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동법에서는 생활임금을 “수용 가능한 생활기준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보수”로 규정하면서(제15조 제7항), 공공조달의 입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시 생활임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입법에 대하여 2015년

14)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49.

15) Dirk Ruffert v. Land Niedersachsen, Case C-346/06. Ruffert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독일 계약당국은 공공부문 산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발주하였는데, 이 계약의 낙찰자였던 폴란드 계약자는 자국 근로자들에게 독일의 산별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독일 계약당국은 해당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종료시켰으며, 이에 폴란드 계약자는 독일의 산별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독일 계약당국의 계약종료는 EC 협정 제49조하에서 규정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위배된다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각국의 임금에 대한 최저기준 설정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임금 설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공표된 법률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의 최저임금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산별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표된’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보수-자민 연정과 노동당 모두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영국의 공공조달에서 생활임금 기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VI. 맺음말

각국의 생활임금 논의는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빈곤층에 대하여 국가가 소득을 보전하는 공공부조제도보다 자립·자활을 중시하는 노동연계복지제도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임금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피는 단순한 임금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영국의 생활임금에 관한 논의들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빠른 기간 내에 사회적·정책적 지지를 받게 된 이유로는 ‘참여의 자발성’과 ‘산정방식의 타당성’에 근거하고 있다. 강제성을 배제한 채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 캠페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생활임금 운동은 최초에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많았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자발성이 생활임금이 정착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런던시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생활임금 산정기관을 설립한 것은 생활임금이 단순히 일부 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산정된 기준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생활임금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추후 생활임금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영국에서 생활임금은 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공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입법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영국의 생활임금에 관한 변화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KLI**

<참고문헌>

- 김기선 외(2013),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연계 -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저임금근로 해소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p.149~199.
- 이영면 외(2013),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 노동부용역보고서, pp.16~18.
- 이정희(2012), 「영국의 생활임금과 노동조합 재활성화」, 『국제노동브리프』 12월호, 한국

- 노동연구원, pp.54~63.
- 양도식(2011), 「대런던위원회 10년의 평가: 기능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국토』 2월호 (통권 352호), pp.96~107.
-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p.2~43.
- Lawton, K. and M. Pennycook(2013), “Beyond the Bottom Line -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a Living Wage”, *IPPR and Resolution Foundation*, pp.19~23.
- Pennycook, M.(2012), “What Price a Living Wage? Understanding the Impact of a Living Wage on Firm-level Wage Bills”, *IPPR and Resolution Foundation*, pp.1~18.